

양양군체육회 인사규정

제정 2024. 04. 02

일부개정 2026. 05.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양군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양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사항을 말한다.
2. “직종”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군을 말한다.
3.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위”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보직”이란 직원을 지정된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진”이란 현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을 말한다.
8. “전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직”이란 정직, 휴직 및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을 직위에 복위시키는 것을 말한다.
11.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규직”이란 일반직을 말한다.

13. “일반직”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기획, 연구관리, 행정, 예산.회계, 종목단체관리, 홍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직종)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그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채 용

제5조(임용권자) ① 양양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6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시험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② 체육회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육회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거나, 법령, 조례, 지침, 기타 규정 등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시험”에서의 채용절차 간소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하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 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단 “체육회” 여건에 맞게 적용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직급 및 직종별 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채용계획 사전협의) ①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양양군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제출이 가능하며, 필요시 양양군과 협의하여 사전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양양군은 제출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체육회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양양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양양군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체육회장은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채용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제8조(공고) ①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가.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나.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후, 양양군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공고기간에 토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② 채용공고는 “체육회” 홈페이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등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③ 채용회는 관련 협회, 단체 등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내용) ①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 시기, 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 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가.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나. 시험위원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②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용) ①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임용대상자 중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임용한다.

② 신규채용 직원에게 전직 경력이 있는 경우 “체육회”의 보수규정 별표 3의 적용률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에 반영한다.

③ 임용일은 임용장에 적힌 일자로 한다.

④ 임용일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인력수급 상 수습기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가.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나. “체육회”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다.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라.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제13조(채용연령제한) 직원의 임용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결원의 충원) ①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 전보 또는 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6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신체정신 상의 장애로 인하여 휴직 중인 경우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제15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3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보직관리) ① 직원의 보직은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실적을 승진·전보 등 인사 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은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③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직원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직과 정원) 직원의 보직은 “체육회”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할 수 있다.

제18조(순환보직) 회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회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동일 직종 및 동일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직무대행) 회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차하위 직급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21조(승진의 원칙) ① 승진은 능력의 검증에 따라 행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제22조(승진순위) ①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승진 후보자명부에 따르며 직급별 결원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② 승진후보자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평정, 다면평가, 사업실적평가 등에 의한다.

③ 승진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 4년, 6급에서 5급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승진 소요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31조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제3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3.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의 징계기간
4. 제3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징계기간

제24조(승진의 제한) ①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②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해야 하며, 징계처분

의 집행이 완료된 채용비위자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의 기간 승진을 제한해야 한다.

* ‘징계의결 요구(또는 지자체의 징계처분 요구) 시점’ 부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 까지를 의미

1. 견책 : 6개월
2. 감봉 : 12개월
3. 강등.정직: 18개월

③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25조(특별승진) ① 체육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체육회”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체육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26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29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직원이 의원면직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3.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5.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사람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는 해당 직원이 인사규정에 의한 정직이상의 징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및 예산의 감소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1개월간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또는 연속 7일 이상 무단결근 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6.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제35조에 따라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 해제된 기간을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을 발견되었을 때

제31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이사변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6.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해외 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8.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②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은 다음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1조 제1항 제1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31조 제1항 제2호 해당자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제31조 제1항 제3호 해당자 : 3개월 이내
4. 제31조 제1항 제4호 해당자 : 2년 이내로 하되, 파견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1조 제1항 제5호 해당자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6. 제31조 제1항 제6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7. 제31조 제1항 제7호, 제8호 해당자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의 보수는 “체육회”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③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초의 1년만 근무연수에 100% 산입하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제34조(복직) ① 휴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직기간 중 사유소멸 : 7일 전
2. 휴직기간 만료 : 1개월 전
3. 제34조 제2호 : 휴직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체육회”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체육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6장 인사위원회

제36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체육회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며, 특별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5. 22〉

③ 내부위원은 “체육회” 선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명은 이사 중에서 체육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임부회장이 된다. 〈개정 2026. 05. 22〉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장이 위촉한다.

1.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자
3.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5.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격 및 심의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6. 05. 22〉

제37조(인사위원회의 임무)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3. 직원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6. 회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한 회장의 요구사항

제3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

지 못하게 되고,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위원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시 해당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징계대상자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39조(소집 및 의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규에 따른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직원의 채용 및 표창에 관한 사항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진행사항 기록과 서류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1조(감사의 출석)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감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및 재심의 등) ①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체육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체육회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복 무

제43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운영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수

제44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9장 상 별

제4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강원특별자치도 및 양양군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
2. 회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6조(포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대외적으로 “체육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사람
5. 그 밖에 “체육회”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제47조(추천과 심사) ① 사무국장은 제46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8조(이중 표창의 금지 및 표창시기) ①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표창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9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체육회”의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때
4. 직무의 범위를 막론하고 “체육회”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경우
5. 직무명령을 위반하거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무단 결근을 하였을 경우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9.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②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와 양정기준) ① 징계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양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월 평균보수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④ 징계처분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징계부가금부과) ① 체육회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의 조정 범위 및 감면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3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54조(공공기관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53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53조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장 보 칙

제55조(재정보증 및 변상책임) ①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육회”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6조(인사기록)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7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 05. 2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직종별 직급 및 직위

(제4조 관련)

직 종	직급	직 위	비 고
일반직	5급	사무국장	전자문서에 해당 직급의 직위를 표기하며, 직제규정상 각 과의 관리자는 과장으로 표기한다.
	6급	과 장	
	7급	팀 장	
	8급	대 리	
	9급	주 임	

직급별 채용기준

(제6조 관련)

1. 일반직

직 급	채용자격
5급 (사무 국장)	1. 체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체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과장)	1. 체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2. 체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체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 급	채용자격
7급 (팀장)	1. 체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고졸이상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급 (대리)	1. 체육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고졸이상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9급 (주임)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해당분야 활용가능 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 우대)